

기관이용안내서



어르신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사랑마을 요양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문의 033-748-555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0 메트로프라자 5층·7층



사랑마을요양원

○ 인사말

“**사랑마을요양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마을요양원의 기본 운영 방침은 기독교적 사명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행을 이웃하게 행하고, 생의 마지막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 생활이 될 수 있도록 “Three Well” 기본방침과 함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운영방침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 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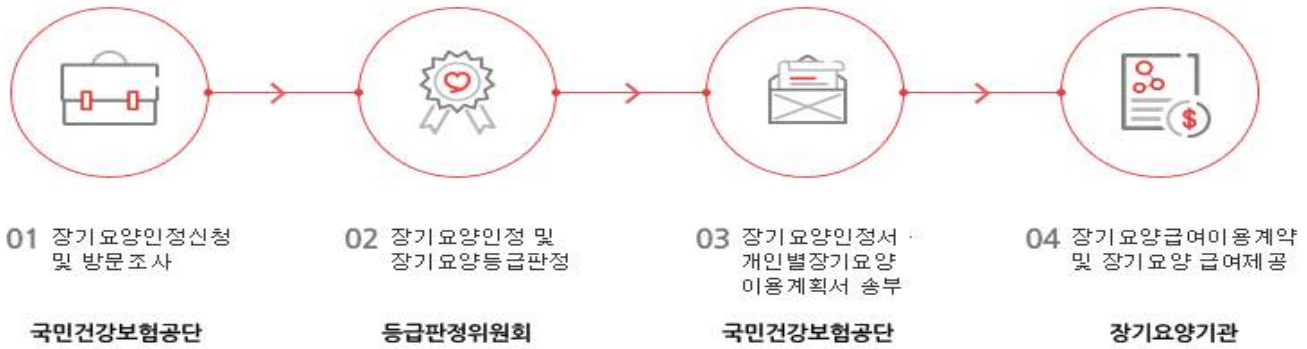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화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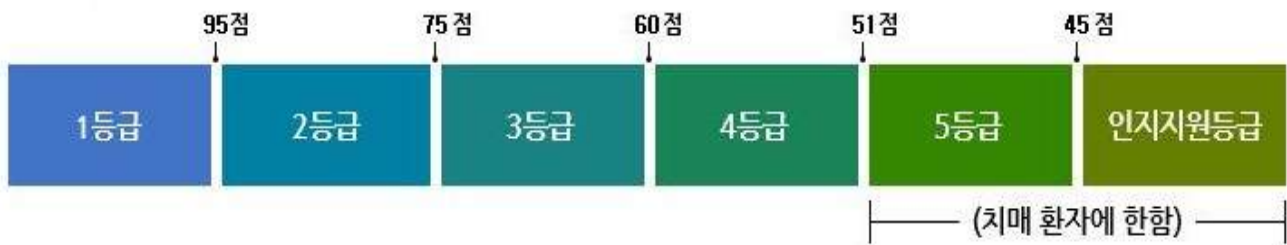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필요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운영규정 개요(입소정원 : 47명)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2) 월 이용료는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에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2) 입소자의 의무
- 3) 입소자의 권리
-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5) 신원인수인의 권리

4. 계약의 해제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4) 시설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 하였을 때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시 변경 3개월 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후 수납
- 2) 납부자와 이용료 합의 :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재계약 시
- 3) 원거리 시설 차량 이용 시 수급자 부담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제공
 -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통지
 - ③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함
 - ④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3)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법조항에 근거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7.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2)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시 이의 없이 변상한다.
- 2)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 변상한다.
- 3)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케나 파손 등에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 ② 투약을 잘못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0. 보험가입

대표자는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 가스사고, 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필수 인원	29	1	1	2	1	20	1	2	1
현재 인원	35	1	3	3	1	22	1	3	1

2.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구분	시간대별		요일별	
	주간(09시~18시)	야간(18시~09시)	평일	휴일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3		2~3	1
간호(조무)사	3		2~3	1
물리치료사	1		1	
요양보호사	8	6	8	8
영양사	1		1	
조리원	2		2	2
위생원	1		1	
합계	20	6	18~20	12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일당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금(20%)	542,700	503,460	475,440
본인부담금(12%)	325,620	302,080	285,260
본인부담금(8%)	217,080	201,380	190,180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재료비	일반식	1식당(간식비 포함) : 3,500원	1일 10,500원
	경관식	1식당(간식비 포함) : 3,500원	1일 10,500원
이미용비, 교통비		미용 시설 이용 요청 시 : 실비 적용 원거리 이동 요청 시 : 실비 적용	이, 미용 시설 기본 제공 시내권 교통 지원(차량)
상급 침실료		없음	필요 시 적용

■ 시설의 규모, 설비

시설규모					
대지	799.7㎡	건물 면적	1101.22㎡	소유형태	자가

시설현황											
침실	특별 침실	사무 실	요양 보호사 실	간호실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자원 봉사 자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 실	목욕 실	세탁 실
16	1	1	1	1	1	2	1	1	4	2	1

■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화재 손해(건물, 집기, 시설)
가스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스 사고(대인, 대물)
배상책임보험 (영업, 전문인)	한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및 전문직업배상

■ 최종 장기요양평가결과

평가결과 없음(신설기관)

■ 월간 프로그램 표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	신체기능(1)	신체기능(1)	신체기능(1)	신체기능(1)
화	인지기능(B) 여가활동(2)	인지기능(B) 여가활동(2)	인지기능(B) 여가활동(2)	인지기능(B) 여가활동(2)
수	신체기능(B) 여가활동(1)	신체기능(B) 여가활동(1)	신체기능(B) 여가활동(1)	신체기능(B) 여가활동(1)
목	인지기능(A)	인지기능(A)	인지기능(A)	인지기능(A)
금	인지기능(C)	인지기능(C)	인지기능(C)	인지기능(C)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 생신잔치(월1회), 명절행사(연 2회)
- 가족참여 프로그램 : 어버이날 행사, 연말행사 등(분기당 1회)
- 지역사회교류 사업 프로그램 : 지역사회 행사참여(연 1회)

■ 급여제공(서비스) 종류

신체활동 지원	①옷갈아입기도움 ②세면도움 ③구강청결도움 ④신체청결도움 ⑤머리감기도움 ⑥몸단장 ⑦식사도움 ⑧체위변경 ⑨일어나 앉기 ⑩이동 ⑪화장실이용하기 ⑫시력 ⑬약복용 ⑭관절움직임
인지관리 정서지원	①인지기능 ②정서지원
건강관리	①투약관리지도 ②약복용 및 인슐린 주사 ③관절구축예방간호 ④건강상태관찰 및 측정 ⑤건강교육 및 상담 ⑥감염간호 ⑦의사진료지원 ⑧치매간호 ⑨의료기관 의뢰
간호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기관절개관관리,산소요법관리) ②욕창간호(예방,피부,상처간호) ③경관영양(비위관관리,영양간호) ④통증간호 ⑤배설관리(도뇨관,방광,회음부,요류간호) ⑥배설간호(관장,장루간호) ⑦투석간호 ⑧당뇨발관리 ⑨구강간호
기능회복 훈련	①신체기능의 훈련 ②기본동작훈련 ③일상생활동작훈련 ④인지기능프로그램 ⑤여가활동프로그램 ⑥신체기능프로그램⑦사회적응훈련 ⑧가족참여프로그램 ⑨물리치료 ⑩작업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 ②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③환경관리 ④물품관리 ⑤세탁물관리

■ 입소자 일일 일과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시간	세부일정
05:30 ~ 07:00	기상준비, 개인위생(세면, 면도 등), 정리정돈
07:00 ~ 08:00	조식 및 투약, 구강관리
08:00 ~ 09:00	자유활동 (TV 시청 및 휴식)
09:00 ~ 11:00	목욕, 건강상태 측정, 물리(작업)치료 및 재활 운동
11:00 ~ 12:00	중식 및 투약, 구강관리
12:00 ~ 14:00	자유 활동 (TV 시청 및 휴식)
14:00 ~ 15:00	간식
15:00 ~ 16:00	그룹 프로그램(인지, 여가, 사회적응)
16:30 ~ 17:30	석식 및 투약, 구강관리
17:30 ~ 21:00	자유 활동 (TV 시청 및 휴식, 정리), 투약
21:00 ~	취침(2시간 간격 체위변경 및 수시 배뇨, 배변체크 기저귀 교환)

■ 시설의 특성

『어르신과 보호자께 만족을 드리는 도심형 요양시설입니다.』

사랑마을요양원은 원주의 새로운 중심지인 원주시청사 앞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한 도심형 요양시설로 가족과의 만남이 언제든지 용이하여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늘 함께 한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시설 내 전 직원의 따뜻한 보살핌과 함께 편안한 인테리어 및 시스템을 갖추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해질 이유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명에 근거한 요양시설입니다.』

인간 존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행을 이웃에게 행하고, 생의 마지막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 생활이 될 수 있도록 “Three Well기본방침”과 함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는데 있습니다.

1) 전문화된 재활 물리치료로 삶의 질을 높여 드립니다.

- 중풍, 파킨슨병 등의 중추 신경계질환의 재활치료와 만성화된 신경, 근육통 등의 통증 치료, 어르신 의료적 상황에 맞춰 진료해드립니다.

2)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안심을 드립니다.

- 병원과는 달리 주거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유닛(unit)방식의 공간설계를 기초로 한 인테리어로 구성된 시설입니다.

3) 필수 돌봄인력의 추가 배치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필수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드립니다.



■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1. 응급환자 발생 => 응급조치(주간 : 간호사 / 야간 : 야간근무자)

2. 연락

구분	요양원	119안전센터
주간	시설장, 간호사	119
야간	야간근무자	

연락우선순위 : 시설장 or 간호사 -> 119

■ 감염병 대응체계

구분 \ 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보호자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사전예약제)			면회 금지	
	영상통화, 다자간 영상면회 “줌” 적극 활용				
자원봉사자 계약의사	자원봉사자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 자원봉사자 실외봉사는 가능 － 계약의사는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방문허용 － 동거가족에 한하여 자원봉사, 외부강사, 출입은 필요 시 허용				

■ 노인인권보호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생활노인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비새김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신고가능



위치 기반 신고연계



사진 / 동영상 첨부



익명성 보장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 후원안내



●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일시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물품후원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들 위해 사용됩니다.

▶계좌안내 : 하나은행, 793-910047-21705, 사랑마을요양원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33-748-5553)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카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